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

2021. 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월 임시국회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 (총괄)

순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발의의원
1	사업이전에서의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안(제정)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시 근로 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및 해고제한 명문화	송옥주 의원
2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 영참기법률안(제정)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 차, 권한, 법적 지위 보장, 이들의 선출절차 및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 금지	이수진 의원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법 일부개정안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법률에 명문화,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이수진 의원, 안호영 의원, 양정숙 의원, 윤준병 의원, 임이자 의원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 연금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제도 합리화(사 전지정운용방법, 투자일임제도 등),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합리적 하향 조정	안호영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 이수진 의원, 한정애 의원
		1년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이수진 의원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최승재 의원, 윤준병 의원, 이수진 의원, 강은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이수진 의원
5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변경	이수진 의원, 전주혜 의원
		근로자의날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	안호영 의원
6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김주영 의원, 박주민 의원, 김경협 의원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정춘숙 의원
8	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및 지원에관한법률안(제정)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근거 마련 등	남인순 의원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질병·부상에 다른 요양으로 소득상실·감소시 상병수당 지급	정춘숙 의원
1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의무·처벌대상 명확화 및 적용범위 확대, 벌 금 하한선 및 징벌적 벌금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등	이탄희 의원
1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송옥주 의원, 김교흥 의원

1.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원칙 명문화**
 - 현행 노동관계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판례법리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같이 명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이전에 따른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 회사의 분할·합병·하청 및 위탁업체 변경 등으로 고용불안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을 두텁게 보호함.
 - 또한,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종전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 승계되도록 함.

- ▶ **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한 해고제한 명문화**
 -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단체협약 상의 노동조건이 노동자 개별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 ※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일부 기업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이전 등 각종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규제할 입법적 해결이 시급함.

■ 입법발의 현황

-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10156	2021.05.17.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전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 등에 따른 권리의 무가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 간의 의사가 아닌 사업이전이라는 사실의 발생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승계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함. - 사업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대상인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규정함. -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규정함.

2.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 입법 필요성

▶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 제정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권한, 선출절차와 방법 등 규정

-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주체 등 중요한 권한의 주체인 반면, 그 활동범위 및 지위보장, 선출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는바, 관련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조치가 요구됨.

※ 특히, 2020.12. 근기법 개정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제 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제도 재편은 긴급을 요함.

■ 한국노총 핵심요구

▶ 근로자대표 선출의 민주적 절차확보

-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 선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
- ‘근로자위원 회의’의 독립적 운영 및 의사결정 보장
-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신설

▶ 근로자대표의 지위 및 활동 보장

- 근로자대표의 다양한 의견청취 의무 및 활동보장 △근로자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권 △서면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권 △근무시간 중의 근로자대표 임금 손실 없는 활동보장
-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금지 및 근로자대표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 금지(위반시 벌칙 신설)
-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

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경영참여 보장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출석권 및 진술권,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노동감사의 선임의무 등을 규정함.

※ **안호영 입법발의안 내용중 반대사항** :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선거인단’ 제도는 근로자대표 선출에 있어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원칙의 위반,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사용자의 직종별-부분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이를 통한 전체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악확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분명히 반대함(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 위반).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률안

○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안(제정)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9602	2021.04.20.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처우, 이들의 선출절차 및 그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금지함. -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제공과 편의제공, 활동시간 보장 의무를 부여함. -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총회를 두어 근로자총회에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함.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권한사항, 이 법에 따른 노사공동위원회 안건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 근로자추천이사, 노동감사, 노동이사 등에 관한 추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주요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 및 협의사항 등을 법률에 정하고, 의결요건, 의결사항의 이행, 임의중재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10064	2021.05.12.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 근로자대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대표의 근로자 의견수렴 의무, 사용자에 대한 협의 또는 자료요구 권한 부여,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로자대표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근로자대표의 임기보장 등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한 경우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110049	2021.05.12.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지위·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2109174	2021.03.29.	양정숙 의원 (무소속)	-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함. -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함.
2107200	2021.01.06.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10058	2021.05.12.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현행법 시행령 제3조의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
-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지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도산시 퇴직급여 채불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업규모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장 일수록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와 연금화를 촉진해야 함.

▶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타당성 없음.
- 건설일용노동자 등도 이미 건설공제회를 통해서 퇴직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플랫폼종사자의 퇴직공제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바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지급도 의무화되어야 함.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적립금 운용제도 합리화(사전지정운용방법, 투자 일임제도 등),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합리적 하향 조정**

- ※ 이와 함께, 현행 계약형 구조 아래에서 나타나는 노사의 무관심 및 전문성 부족, 저조한 수익률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바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자산운용방식 개선을 위한 디폴트 옵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2324	2020.07.23.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 제11조 및 부칙 제2조)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기업규모간 노후 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2)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2100172	2020.06.04.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근속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 :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일수” 내지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12개월분 임금으로 환산액 금액”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함.
2107550	2021.01.21.	안호영 의원	-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p>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p> <p>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p> <p>-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p> <p>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자(자산운용기관)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p> <p>2) 사용자에게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p> <p>3. 수수료</p> <p>1)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p> <p>2)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에게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p>
2108844	2021.03.17.	윤창현 의원 (국민의힘)	<p>-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 포함</p> <p>-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p> <p>- 수수료 :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p>
2107867	2021.02.02.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p>-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설정 및 운영 등</p> <p>-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p> <p>- 수수료 : 운용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p>
2103174	2020.08.24.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p>-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함.</p> <p>-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안 제21조의2 신설)</p>
2109908	2021.05.04.	류호정 의원 (정의당)	<p>- 현행법은 4주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p> <p>-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p>

4. 「근로기준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동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법률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11조를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의 일원화

- 2018.5.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으로 인하여 단계별로 미산입범위 축소시 연장노동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밀도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혼란과 노사갈등이 가중되고 있음.
 -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약 이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4년까지 일몰식 미산입비율 축소의 복잡한 계산법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조차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
- 최근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는 바로잡아야 함.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6983	2020.12.29.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영세 사업장 또는 사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2106981	2020.12.29.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로 함.
2106882	2020.12.23.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더욱 두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텃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2104382	2020.09.29.	강은미 의원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제1항 본문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함. - 제9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함.
2105529	2020.11.19.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함.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

5.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노동절’로 명칭변경

- 메이데이(MayDay)의 유래와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날’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노동절’로 변경함.

▶ 노동절의 ‘법정공휴일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5월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 공무원들도 정상 출근해야 하는 바 위 규정에 노동절을 포함시켜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함.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0115	2020.06.03.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108830	2021.03.16.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적용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함.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꾸고, 노사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20.11.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정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타결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함.
- 이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5514	2020.11.19.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여성임원이 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 목표를 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추천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 임명할 임원 수의 2배수 이상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 -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함. -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102985	2020.08.14.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노동이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근로자 정원의 100분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 가능)에 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임명하여야 함.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사는 상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해당 기관과 체결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노동이사 임기 중에 휴직한 것으로 함.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노동이사는 새로운 노동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행함. - 노동이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 해당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퇴임으로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함.
2101066	2020.06.26.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함. -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어야 함.

7. 「국민연금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국가책무 강화

- 국민연금의 지속적 개혁을 위해 급여율 상향,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 여러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개정을 통해 기금고갈론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연금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야 함.

■ 입법발의 현황

-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6569	2020.12.16.	박대수 의원 (국민의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안 제3조의2 2항 신설)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01461	2020.07.06.	김성주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 개혁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위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해서,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선언을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생산적·발전적 논의에 기여. 첫째, 안 제3조의2를 1항으로 하며 “국가는 이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2항에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2101355	2020.07.02.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안 제3조의2 수정) : 국가는 이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2100394	2020.06.11.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안 제3조의2 2항 신설) :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2100326	2020.06.10.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 첫째, 안 제3조의2를 1항으로 하며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제2항에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를 신설함.

8.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공공성·전문성·투명성 제고로 확고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 등 처우개선과 관련된 책임 강화
- 사회서비스원 수행사무를 지원하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 사무나 운영 및 국공립기관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수행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함.
- 여야 합의로 최근 5.21.(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일부 우려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음. 따라서 기존 노동시민사회진영과 협

의하여 만든 남인순 의원안을 기준으로 핵심사안에 대한 수정없이 법안을 최종통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임.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0046	2020.06.01.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 -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

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상병수당 도입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픈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라도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하는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음.

※ 수년 이내에 또 다시 감염병 확산의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반

영하는 사회적 대응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상병수당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정부와 국회는 OECD 국가 중 사실상 한국만 없는 상병수당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도입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더불어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 준수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모호한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활용하여 20%의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준수할 수 있는 법안과 국고지원의 한시적인 조건을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 입법발의 현황

-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7512	2021.01.20.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킴.
2104286	2020.09.28.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행법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의무·처벌대상 명확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9호 가목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누가 의무와 처벌 대상인지가 불명확함.
- 본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함.
- 제2조9호나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와의 정합성을 고

려하여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삭제 필요

- 본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만을 의무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적용범위 확대**

- 본법은 제정과정에서 원안과 달리 개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대상이 되었음,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차별화를 둔 행위임.
- 개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미비한 안전보건을 개선할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있어도 적용제외 대상은 아니라고 봄. 즉각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도 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함.

▶ **벌금 하한선 및 징벌적 벌금 도입**

- 본법의 배경이 되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무제한 벌금(징벌적 벌금)이 가능한 구조임.
-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과 달리 입법안으로 확정될 때 벌금의 하한선 및 징벌적 벌금이 사라지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상한선만 존재하여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짐.
- 벌금의 하한선 및 징벌적 벌금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제1의무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선제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 본법 제16조의 경우, 시행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이는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본법을 3년간 적용 유예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미비한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고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는 2024년 1월 27일 이전에 충분한 대책이 정부에서 나와 실행되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음.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관련 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	------	-----	------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10092	2021.05.13.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숨방망이 처벌' 때문임.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산재사고사망을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임.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졌자,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평균 4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임. 영국은 최소액이 약 8억 원임. 한국 노동자 177명이 사망할 시 나오는 액수임. - “양형특례조항”은 산재 사건에서 판사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산재사고 전문가, 유가족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하게 하는 것임. -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페널티를 부과해야 함.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임.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함. -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림.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입법 필요성 및 한국노총 핵심요구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도입

- 원·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 지적되고 있음.
- 노무비 삭감에 따른 실질임금의 하락은 신규 내국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의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힘.
- 또한, 적정임금을 도입하면 임금삭감 경쟁을 억제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내국인 숙련인력과 신규 인력의 유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안전 효과가 제고 될 수 있음.

■ 입법발의 현황

▶ 소관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관련 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7615	2021.01.25.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주요내용
2107820	2021.02.01.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노무비를 산정·고시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적정노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항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관리하도록 함. - 적정노무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